

배리어 프리 디자인

金光文 漢陽大学校工大教授

一序論

— 아키텍처얼 배리어 (Architectural Barrier) 라는 말이 있다. 身体的인 障害를 받은 사람이 보조기구를 사용하면서 全人格의 복귀를 목표로 전진하고 있을 때 바퀴의 자를 타고 갈 수 없는 높은 계단, 좁은 복도, 무거운 문, 등은 障害者의 通行을 가로막게 되는데 이것을 建築的 障害物이라 한다. 障害者에 관한 데이터가 머리 속에 들어 있지 않은 建築設計者는 모른다는 事実만으로 妨害物을 建築에 付加하여 가게되어 障害者에 对하여 加害者의 인役割을 하고 있다는 뜻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障害者의 각타입마다의 요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建築設計의 資料도 하기 위하여 이것을 알려줄 必要가 있다. 같은 建築家이면서 加害者로써 고발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身体障害者와 建築

最近 우리나라에서도 生活環境의 質에 对한 閑心이 高潮되어 가고 있다. 人間이 살아가는데 있어 基本条件인 衣, 食, 住 中에 서도 衣食은 必要以上의 水準에 達하고 있다. 그러나 住에 对하여는 質의 水準은 아직 그 地位를

確立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住에 对한 一般의 認識과 並行하여 “社會的弱者”的一部에 属하는 身体障害者에 对한 住의 問題도 一般健康者에 住에 問題와 같이 生活環境 全體속에서 파악되어야 하겠다. 従来에는 身体障害者의 問題는 “Rehabilitation”이라는 말에 나타나듯이 医學的 側面의 問題로써 社會에 接近되어 있어 그들의 住에 对한 問題도 主로 医療體系內에서의 住, 即 医療施設로써의 住로써 생 각하여 왔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는 医療體系가 그들에 对한 役割을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시스템이 拡大되어 生活環境全體 中에서 医療體系뿐만이 아니라 勞動環境, 社會, 文化環境에 까지 침투되는 本來의 一貫된 Rehabilitation의 連續性에의 認識이 높아져 가고 있어 各種運動·施策도 施設中心의 福祉로 부터 住宅福祉로 方向의 転換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이와 같은 転換은 간단히 말하자면 身体障害者가 태어나 成長하고 일하며 놀던 空間에서 父母兄弟, 친구들과 같이 喜怒哀樂을 같이하는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住宅中心의 福祉를 생 각할 때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하나로써 物理的인 住環境의 문제인 것이다. 病院에서 여러 가지 치료 훈련을 받고 自宅에 돌아와 보니 이전에 살고 있던 住宅에서의 不便함, 또 外出했을 때 길 가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다.

또 自宅을 新·改築할려고 해도 어디에서 어떻게 相談해야 할지 또 相談을 받은 建築家도 적절한 資料가 없어 指導할 수도 없다. 結果的으로 不完全한 住生活을 強要 당하게 되어버린다. 이 物理的環境의 不便함이 教育問題

나 취직 問題, 또는 社会, 文化活動의 阻害의 原因이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痛感하는 事實인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을 우리 建築家는 어떻게 解决해 나가야 할 것인가 또 그와같은 문제들을 여러 나라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나를 살펴본 다음 우리의 갈길을 設定하여 여러 專門 家들과 같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美国, 英国, 독일의 身體障礙者들을 위한 建築基準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建築基準化確立의 方法, 方向을 살펴보기로 한다.

公共施設의 建築基準

—미국의 기준에 관하여—

欧美諸國에서 現在 公共施設 또는 住宅의 建築基準이 定하여진 나라는 네델란드의 N.T.V. (The Netherlands' Society for Rehabilitation)의 調査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東獨, 西獨, 핀란드, 프랑스, 英国, 애일랜드, 이스라엘, 뉴우지일랜드, 이탈리아, 네델란드, 폴란드, 스웨덴, 美国等 18個國에 이른다.

이들 建築基準中에서 가장 일찍이 制定되어 있었고 또 큰 영향과 반향을 일으킨 것이 1961年 美国의 A.S.A. (American Standard Association)에 의하여 作成發表되고 채택된 "American Standard Specification for Making Buildings and Facilities Accessible to Usable by, the Physically Handicapped" (身体障害者들도 接近・使用可能한 建築・設備를 위한 美国基準)이다.

이 美国基準의 成立以来 美国 各州 또는 欧美여러 나라에 많은 차극을 주게되어 이를테면 1963年 英国의 "Accessible for the Disabled to Buildings"의 制定, 1965年 캐너더의 "Buildings Standards for the Handicapped"의 成立과 같은 각국에서의 基準화에 이르는 原動力의 役割을 하여 現在에 이르렀다.

그러나 同時に 이 美国基準의 정신 또는 成果를 일단은 높이 評価는 하지만 딴 나라에서 이 基準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參考로 할 경우 단순히 人体 치수의 差異나 生活樣式의 相違라는 側面뿐만 아니라 基本的인 觀點에서 그 基準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 하나의 例로 対象으로 하고 있는 建築과 身障者の範圍가 있다. 美国基準에서 "住宅을 除外한 모든 公共施設・設備를 모든 身障者が 接近할 수 있도록" 하는 条項을 들 수 있다. 現実로써는 거의 모든 建物이 身障者에게 使用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種類의 建築物을 改善改造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費用과 時間을 要한다는 現実性의 問題, 또 対象으로 하는 身障者の 경우에도 步行不能者(바퀴의자 常用者), 步行困難者, 보청구 等의 使用者, 視力障礙者, 청력障碍者, 平衡障碍者, 또 老令者 等을 총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같은 바퀴의자 使用者에도 그 病因, 障碍의 部位나 程度, 年令 等에 따라 여러

가지의 建築物인 要求가 다른데 이를 모든 身障者の 要求를 滿足시키는 建築設備가 現実의 으로 可能할 것인가가 의문이다. 결국은 "모든 建築 設備를 使用할 수 있도록"이라는 法律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는 없다는 것과 모든 建築을 말하는 것인가? 重工業의 工場까지를 포함하는가? 라는 의문도 생긴다.

이와같은 美国基準에 대하여 英国의 建築家 Selwyn Goldsmith는 다음과 같은 観點에서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言及을 하고 있다.

1. (a) 바퀴의자 使用者를 위한 特別한 배려를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建築
- (b) 全身障害者에 对한 고려를 하여야 하는 建築
2. (a) 接近할 수 있는 것 만이 필요한 建築
- (b) 接近도 하고 使用도 할 필요가 있는 建築
3. (a) 一般사람들에게 使用되는 建築部分
- (b) 직원들 만이 使用되는 建築部分
4. (a) 基準法適用의 義務化되는 建築
- (b) " " 을 권장은 하지만 特別한 경우를 例外하고 반드시 適用하지 않아도 무방한 建築

以上은 (1)建築이 바퀴의자 사용者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身障者를 바퀴의자 사용자와 그外의 身障者の 2種類로 大別하고 있다는 点 (2)建築이 接近만이 可能한가 또는 使用을 可能하게 하는 기능(설비)의 問제 (身障者の 便所設置 等) (3)身障者가 그 建築을 利用만을 하는것이냐 또는 거기에서 일 할 수도 있게 하느냐 하는 고용의 問제 (4)建築의 公共性, 社會性의 問제 — 以上과 같은 관점에서 建築을 살펴보자는 提案을 하고 있다. 今後 우리나라에 私的, 公的인 施設에 어떤 基準을 設定할 때에는 이 Gold Smith의 見解를 많이 참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독일에서의 DIN 基準에서는 美国基準에서 言及하지 않은 移動空間 道路, 交通機關에 까지 基準이 있어 그外에 住宅(身障者用)의 基準에 関한 것 까지 포함되어 있다.

住宅의 建築基準

—독일 DIN(工業規格)을 中心으로—

生活環境은 公共建築, 道路 交通機關 그리고 日常生活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居住部分의 三者가 整備되어야 全體의 機能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身障者를 위한 住宅基準은 各国多様이다. 그러나 크게는 둘로 大別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네델란드 또는 독일과 같이 公共施設과는 獨立된 형으로 또는 시리이즈의 一部로써 制定된 것과 또 하나는 캐나다, 벨기에와 같이 住宅基準이 建築基準의 一部로써 삽입되어 있거나 付加되어 있는 것이다.

表 1 身体障害者와 建築機能条件

建築 身體機能 障害者	ACCESSIBILITY (접근 · 이동가능성)	USABILITY (使用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坪地勾配 · 出入口의 同一 LEVEL 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同左
바퀴의자 使用者를 除外한 身障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公用步行의 有効幅勾配, 站 면마감, 휴식장소 ● 身障者用駐車 SPACE 駐車幅動線 ● 建物에의 SLOPE勾配 SLOPE 下端의 安全 平面치수, SLOPE의 HAND RAIL의 形式치수 ● 出入口의 種類와 치수 ● 出入口 문의 操作性, 有効幅 동작치수와 内外 바닥 높이의 関係 ● 계단의 형식, 치수, 안전성 ● 엘리베이터의 操作性 LEVELING ● 기타(바닥마감, 조작기구의 조작성 의치, 설비 표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 " ● " ● 同左 ● 同一층의 바닥 의 高低差 ● 同左 ● 便所의 数와 種類 ● 身障者에 使用 可能한 公衆 部의 形式과 수 ● 同左
바퀴의자 使用者를 포함한 身障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坪地勾配·出入口의 同一 LEVEL 性 ● 步道有効幅勾配 平面 平面마감 · 휴식장소 ● 身障者用駐車SPACE, 駐車幅 動線 ● 建物의 SLOPE勾配 SLOPE 下端의 安全平面 치수, SLOPE·HAND RAIL 의 形式과 치수 ● 出入口의 종류 数 ● 出入口문의 操作性, 有効幅, 動作치수와 内外 바닥 높이와의 関係 ● 同一屋의 바닥의 高低差 (복도와 화장실등) ● 엘리베이터의 操作性 LEVELING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同左 ● 同左 ● 同左 ● " ● " ● " ● " ● " ● 同左 ● 同左

註) 이것은 Goldsmith가 말하는 建築의 型分類軸中 1과 2의
相関을 취하여 建築이 가져야 할 主要 機能을 美國 기준
으로 Pick-up하여 整理한 것이다.

表-2 建築種別과 建築기능
(Gold smith 提案)

身障者의 出入범위	一般出入 部分	職員出入 部分	建築機能 “V” 접근 가능 使用 가능
建築種別	바퀴 의자차 使用者 를 포함	바퀴 의자 使用者 除外함	“A” 접근만 가능 “U” 접근이 바람 직하다.
	↓	↓	↓

建築機能
“V” 접근 가능
 使用 가능
“A” 접근만 가능
“U” 접근이 바람
 직하다.
() 내는 바람직한
 것을 뜻함.

(行政・産業用建物)				実験室		U U	
● 公会堂	A (u)	U	U U	準備室		a (u) U	
● 市庁舎	A (u)	U	U U	厨房・調理		a U	
● 우체국	A	U	u U	看護員숙사	u	U	a U
● 경찰서	A	A	U	● 診療所	U	U	U U
				診察室			
● 中央판공서	A	A	U U	医務院	A (u)	U	U
● 国会 의사당	A	A	U U	歯科医院	A (u)	U	u
● 地方行政庁	A	A	U U	○ 養老院 (飲食, 娯樂建築)	U	U	U
● 세무서	A	A	U U	● 高級 ● 레스토랑	U	U	U
● 年金関係 建 物	A	A	U U	● 小規模 ● 食堂	A	U	U
● 勞務関係 建 物	a	A	U U	○ 다방	A	U	U
● 大規模商業事務所	A	A	U U	● 음료 ● 판매소	A (u)	U	U
● " "	A	A	U U	● 水泳平臺	U	U	U
展示場(gas·電気・水道)	A	A	u U	● 音楽堂	A (u)	U	U
● 銀行	A	A	u U	● 劇場	A (u)	U	U
● 슈퍼마켓	A	A	U	● 무용실	a (u)	U	U
● 데파트	U	U	u U	● 映画館	A (u)	U	U
(輸送, 工業用建物)				● 運動競技場	A (u)	U	U
● 主要鉄道駅	A (u)	U	U	● 共同集会場	U	U	u U
● 鉄道小駅	a	A	u	● (宗教建築)			
● 地下鉄駅		a	u	● 教会礼拝堂	A	A	U
● 케라지, 개소린, 스텐드등서어 비스스타운	A	A	U	● 教会内集会場	A	A	U
● 터미날空港	U	U	U U	● 火葬場			
● 버스터미널	a	U	U	(教育, 文化施設)			
● 重工業(工場)		A	u	● 国民学校	A (u)	U	U
				● 中・高等学校	U	U	u u

同(管理部)	A	A	u U	●大学校	U	U	U U
●軽工業(工場)			U U	●美術、技術、商業 専門学校	U	U	U U
同(管理部)			U U	●研究所	U	U	U U
(保健・厚生 用建物)				●動物園	A (u)	U	u U
●病院管理部	A	A	U U	●博物館	A	A	u U
病室	U	U	U U				
治療室	U	U	U U	●美術館	A	A	u U
外来部	U	U	U U	●公立図書館	A	A	u U
(住宅에 準 한 建築)				(其他)			
●旅館	U	U	U	●公園	A	A	
●호텔	U	U	u U	●公衆便所	u	A	U
●클럽建築	U	U	u U				

여기에서는 一般健康者와의 連続性 또는 公共施設, 設備와의 関連을 고려한 一連의 規格시리이즈로써 身障者의 住環境을 취급하고 있는 DIN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2年 DIN 18025 B 1 重身障者를 위한 住居

- 바퀴의 자常用者對象 -

DIN 18025. B 2 重身障者를 위한 住居

- 盲人, 視覚障害者를 对象 -

1973年 DIN 18024 B 1 公共移動空間

- 身障者, 老人을 对象 -

DIN. 18024 B 2 公共施設

- 身障者, 老人을 对象 -

독일에서는 위의 身障者의 住居基準의 設定에 앞서 이미 一般健康者를 对象으로 하는 住居基準이 DIN에서 制定되어 있다.

또 DIN에서 特記한 事項은 最小限 確保하여야 할 必要条件과 더 나아가서 設備 等을 充実하게 하기 위하여 추천条件을 区別하여 基準全体에 어느 폭을 갖고 住空間의 質을 向上하려는 努力이 엿보인다.

바퀴의자 使用者 以外에도 盲人, 청력障害者를 위한 住宅도 따로된 基準이 있고 公共施設이나 移動空間의 基準制定이 一連의 住宅基準制定后에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DIN의 特徵이라 할 수 있겠다.

日本에서의 基準화의 움직임

日本인 경우 아직 公共建築에 对한 基準은 制定되어 있지 않으나 身障者施設에 对한 関心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住宅인 경우에는 우선 身障者를 위한 住宅의 改築 改造時 경제적 원조라든가 公營住宅에의 優先入住等의 施策이 이루어지고 있다. 1971年에는 心身障害者世帯를 위한 公營住宅建設等에 関하여”라는 通報가 建設, 厚生省에 連名으로 發行되어 그것을 基本으로 그에 関한 研究, 調査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從來의 生活環境의 設計는 모두 一般健康者들만을 對象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医學의 發展에 따른 死亡率低下로 因하여 老令人口 및 身障者?의 增加는 우리 建築家 들에게 새로운 課題를 提示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公共施設이나 道路, 交通機關 또는 住宅이 빠른 時期에 老令人이나 身障者를 받아 드릴수 있는 体制를 갖추어야 하겠다. 特히 住宅에 関해서는 身障者, 老令者에게 뿐만 아니라 一般健康人이나 어린이 들에게도 充分한 居住水準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이다. 今後 점차적으로 制定될 各種 施設基準에 老人, 身障者들을 위한 배려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비록 그와 같은 基準이 만들어지기 以前에라도 어떤 建築에 設計에 임할때는 그들에 계고발을 받지 않고 바람직한 生活環境을 만들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것인가를 각자가 생각하여야 할 문제일 것이다. 身障者를나 自身이 아닌 他人的 事件으로 생각하고 있을때 언제 우리自身의 問題로 될지 모른다.

